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CCTV 및 비상벨 시설점검 의무 신설 》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72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제221247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CCTV 및 비상벨 시설점검 의무 신설(안 제19조의4 신설)	3

I.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제221247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8. 28.

다. 회 부 일 : 2025. 8. 29.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시설의 오인신고·오작동 등 실태와 유지·관리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와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공원관리청에게 CCTV와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19조의4 신설).

3. 검토의견

가. CCTV 및 비상벨 시설점검 의무 신설 (안 제1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9조의4(시설점검) ① 공원관리청은 제19조의2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관리 시 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u> <u>②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은 도시공원의 비상벨 등 시설의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원관리청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원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해당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회신하여야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u>

현행법 제19조의2¹⁾는 공원관리청이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2조²⁾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이나 도시공원 내에서 설치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 또는 오작동으로 확인되어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하고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관리 시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시설 개선을 요청한 경우 공원관리청이 이를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점검을 강화하여 도시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 제22조³⁾는 공원관리청이 CCTV와 비상벨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⁴⁾에 따라 도시공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종류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 규정에 따른 점검을 통해 CCTV와 비상벨 시설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상태나 유지·관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현행법 시행령 제15조의2⁵⁾에 따라 매년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설점검에 대한 별도의 조문 신설 없이 현행 규정을 통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

3-3-1. 도시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5)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써 초기 설치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제조·시공자가 행하는 초기점검(시설 설치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설치업자가 하는 점검), 공원관리자가 행하는 일상점검(관리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전문기술자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정밀점검(필요시 관리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점검)으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공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에서 이미 CCTV와 비상벨의 설치와 함께 관리와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관리 시 주민과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지침에서는 공원시설의 주기적 점검⁶⁾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조문 신설의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는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제출기관	제출의견
서울특별시	○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및 제22조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매년 주민과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공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의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은 통상적인 공원시설 관리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중화장실법」 등 현행 법체계 내에서 관리·운영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581

6) 초기점검(시설설치시), 일상점검(관리자가 일상적으로 수행), 정기점검(전문기술자에 의한 주기적 점검), 정밀점검(필요시 관리자 요청에 의해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점검)